

대구지방법원 2022. 8. 10 선고 2021가단12106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홍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2. 7. 6.

판 결 선 고 2022. 8. 10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8. 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8. 8. 3. 접수 제211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C유한회사는 2012. 5. 27. B를 상대로 30,968,088원 및 그 중 11,879,28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지급명령이 2012. 7. 26. 그대로 확정되었다(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2차전271).

나. C유한회사는 2018. 1. 26.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,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 2021. 5. 10. 기준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합계 47,395,666원(= 원금 11,879,282원 + 미지급이자 35,516,384원)이다.

다. B은 2018. 8. 3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04. 3. 30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아들인 피고에게 2018. 8. 1.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를 원인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, 갑 제7, 8호증(가지번호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,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,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나.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사공민

별지